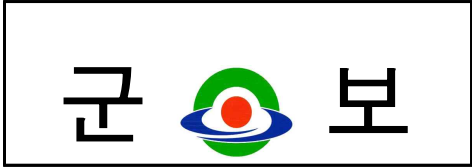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62호 2024. 10. 14.(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457호)
-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4-1459호)
- 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462호)
- 예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463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예 천 군



1. 조 례 명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예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변경 : 예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용어 정의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 귀농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예천군에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등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귀촌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고, 예천군에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농·귀촌 지원 :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예천군 귀농인,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천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활동
- 귀농인의 집 :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

다. 귀농인 관련 지원 사업 정비(안 제7조)

-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재정 지원

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귀농인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예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귀농·귀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 가능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mw123529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농정과

3) 팩스 : 054-650-626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2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예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4호) 중 “예천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등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농·귀촌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6.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중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귀농인”을 각각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인”을 “귀농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6. 그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귀농·귀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u>	<u>예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예천군 농업의 안 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 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u>귀 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귀 농·귀촌인</u>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u>뜻은</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u>귀농인</u> ”이란 65세 이하이면 <u>서 이주하기 직전에 타 지역 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던 사람으로 농업경영을 목 적으로 가족이 함께 예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 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u> 을 말한다.	2. “ <u>농촌</u> ”이란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5 <u>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u>
3. “ <u>지원</u> ”이란 <u>귀농인의 안정적</u>	3. “ <u>귀농인</u> ”이란 「 <u>귀농어·귀</u>

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
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4. “타 지역”이란 예천군 이외의

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으로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
제 거주하면서 농업 등을 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귀농어·귀
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
으로서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
다.

5. “귀농·귀촌 지원”이란 도시
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
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
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
정적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6.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
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
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군 -----.

8.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조(수당 등) -----

-----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3장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
귀농·귀촌인-----

-----.

- ② ----- 귀농·귀촌인-----

-----.

제7조(사업의 지원) ① ----- 귀농인 등-----

-----.

1. ~ 4. (생략) <u>5.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u> <u><신설></u> ②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u>5. 예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u> <u>6. 그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현행과 같음) <u>제7조의2(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귀농·귀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1. 귀농인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2. 예비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u>
---	---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예 천 군



1. 조 례 명 :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시설인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를 이용하는 보훈 관련 대상자, 수급자, 다자녀가정의 시설이용료를 감면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 및 예우(禮遇)를 하고자 함

-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이용료의 반환 사유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대상 정비(안 제11조)

-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 시설이용료 5,000원 감면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설이용료의 반환 사유 및 범위 정비(안 제12조)

-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 취소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 발생 및 시설 사용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일부 반환) 사용예정일 2~4일 전까지 취소 시 1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20% 공제, 당일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시 30% 공제 후 반환

4.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lsoh8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농정과

3) 팩스 : 054-650-62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농정과(전화: 054-650-62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를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 중 “이하‘사과테마파크’”를 “이하 “사과테마파크””로, “일원에 둔다”를 “일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캐러밴사이트, 자동차캠핑장,”을 “데크사이트, 파쇄석사이트 및”으로 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중 “군민”을 “예천군민”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5조의 제목 “(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관리·운영하계”를 “관리 및 운영하계”로, “단체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운영·요금”을 “관리 및 운영, 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캠핑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군”을 “예천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단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예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중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이용료를”을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
 13.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14.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수련활동 참가자
 15.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캠핑장 시설이용료를 5,000원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시설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체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시설 사용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
- 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 시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예천군이 부담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17조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며, “시행령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시행령, 「예천군 공

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이용료(제3조, 제8조, 제11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이용기준	주말·공휴일	평 일	비 고
테크·파쇄석 사이트	1개소/1일	40,000	30,000	※ 화장실, 식수대 등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 1사이트당 텐트 1동, 인원 5인, 차량 1대 기준

*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시작일 기준)

- 평 일 : 일요일~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시설이용료 추가)

* 시설이용료 감면

- 5,000원 감면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 전액 감면 : 예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1개 시설에만 감면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u> <u>관리·운영 조례</u>	<u>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u> <u>관리 및 운영 조례</u>
<u><신 설></u>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의 <u>관리·운영</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관리 및 운영</u> ----- -----.
제2조(위치)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u>이하 ‘사과테마파크’</u> 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160번지 <u>일원에 둔다.</u>	제2조(위치) ----- ----- <u>이하 “사과테마파크”</u> ----- ----- <u>일원으로 한다.</u>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자”란 시설을 <u>관리·운영하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또는 시설을 <u>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u>	2. “관리자”란 시설을 <u>관리 및 운영하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또는 시설을 <u>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법인·</u>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4. (생략)

5. “사과테마파크 내의 오토캠핑장”운영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가.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캐리밴사이트, 자동차캠핑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나. ~ 라. (생략)

제4조(기능) 사과테마파크는 군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과를 주제로 한 자연친화적 휴양 시설 및 사과홍보의 장을 제공한다.

<신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사과테마파크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거나, 농업법인, 개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용·

·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4. (현행과 같음)

5. -----

-----.

가. -----
----- 데크사이트,
파쇄석사이트 및 -----

-----.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 예천
군민 -----

-----.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
-- 관리 및 운영-----
-- . -----

----- 관리 및 운영하게 ---
-----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

수익허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과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사과테마파크의 관리·운영·요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해당부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하며,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의 관리비용의 전부와 시설 전반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조(수탁운영자의 사용료 등의 산정 및 감면) 수탁운영자의 사용료 등의 산정 및 감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② ----- 관리 및 운영-----

③ -----
----- 관리 및 운영, 요금-----
-----.

④ -----
----- 관리 및 운영-----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운영자의 사용료 등의 산정 및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

를 따른다.

제8조(시설이용료) ① ~ ③ (생략)

<신 설>

제10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생략)

② 시설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단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료 감면)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우리군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

례」-----.

제8조(시설이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캠핑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예천군 -----
----- . 다만, -----

-----.

③ 위탁 -----

-----.

제11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예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
-----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을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사과테마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또는 기업체
가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
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
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나. 예천군 교육장 또는 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들의 단체
수련 · 활동을 하는 경우

3. 100분의 30감면

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
어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
사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를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한정하여 시설이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 설>

행사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

13.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14.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수련활동 참가자

15.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캠핑장 시설이용료를 5,000원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

제12조(시설이용료 반환)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시설이용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군수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시설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체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설 사용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귀

제13조(시설의 이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u>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 <u>우 : 일부 반환</u> <u>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4</u> <u>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u> <u>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u> <u>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u> <u>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u> <u>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u> <u>경우 : 납부 금액의 20%</u> <u>공제 후 반환</u> <u>다.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u> <u>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u> <u>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u> <u>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u> <u>환</u> <u>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u> <u>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u> <u>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u> <u>하여야 한다.</u> <u>③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 시</u> <u>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예천</u> <u>군이 부담한다.</u> 제13조(시설의 이용제한 등) ① ----- 관리 및 운영-----
---	---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 ----- -----. ----- ----- -----.
② (생략) 제16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험 가입) ① ----- ----- -----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 ----- -----.
② (생략) 제17조(준용) 관리·운영사무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 관리 및 운영-----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 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다.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문학지 발간, 공연, 전시, 문화·예술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및 도서관 지원, 전국단위 경연대회, 예천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도 단위 문화예술대회, 전통문화·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

라.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문화예술진흥 사업(행사 및 공연)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예천군 문화예술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마.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ve7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3) 팩스 : 054-650-63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전화: 054-650-63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뜻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문화·예술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및 도서관 지원
3. 전국단위 경연대회, 예천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도 단위 문화예술 대회
4. 전통문화·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5. 전통문화·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
6. 전통문화·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발전을 위한 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활동
7.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8.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9.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지원·육성
10.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노인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사업
12.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
13. 군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지원
14.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창의적 표현활동과 결과물
1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천군 문화예술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 결과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공고 제2024 -1463호

예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예 천 군



1. 조 례 명 : 예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2. 제정 이유

가. 예천군 관광진흥 여건 개선과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관광사업 추진의 위탁 및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지역 기반형 관광 생태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성장 도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관광사업 지원대상 및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지원대상 : 관광객을 모집하여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팸투어 참여자,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이벤트 참여자 등
- 지원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등

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해설 활동 추진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 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공동 근무복, 국내·외 선진 비교시찰 활동경비 등 지원

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지원내용 : 관광진흥 각종 시책 및 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과 사업대상지 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광홍보 또는 관광마케팅에 필요한 관광기념품·관광사진 등의 공모사업 등
- 관광객 유치,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

마. 관광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탁 범위 :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관광박람회·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운영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gmlwhd2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3) 팩스 : 054-650-63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전화: 054-650-63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팸투어”란 관광지나 여행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자, 블로거, 여행사, 출향인, 기부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관광,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홍보·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

한다.

7.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을 군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당일·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3.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군과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철도여행객 유치 관광상품, 자치단체 간 상생협약에 의한 관광상품, 민간과 협약에 따른 관광상품 등을 포함한다)
4.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5.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이벤트 참여자
6. 지역축제나 행사개최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관광사업자, 기관·단체, 법인
7.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와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자원 홍보물 또는 기념품, 물품(지역사랑상품권 포함) 제공
3. 군의 유료 관광시설 이용요금 전부 또는 일부 할인
4. 일정 규모 이상 단체관광객의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5. 국내·외 소규모 관광객 및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6. 군 주관 팸투어 참여자 여비, 관광지 요금 감면 등 지원
7.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8. 그 밖에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배

치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3항,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추진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
3.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공동 근무복
4. 국내·외 선진 비교 시찰 활동 경비
5. 정기 보수교육 등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진흥 각종 시책 및 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

2. 제1호의 사업대상지 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역량 강화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또는 관광마케팅에 필요한 관광기념품·관광 사진 등의 공모사업
2.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나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기념품·관광 사진 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2. 관광박람회·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3. 내국인 관광객·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운영
 5.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6. 관광 관련 공모전
 7.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